

제 25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11.10.)

# 조 례 및 일반의안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5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6
6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8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9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10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4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73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5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77
15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0
16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3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0. 20. 권재경 의원 외 10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 10.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재경 의원]

### 가.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주요내용

- 1)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 2) 교류협력사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4)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제13조)
- 5)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6) 위탁관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새롭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 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민간단체 차원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로 한민족공동체 간의 동질성 확인의 기회로 말미암아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2. 경상남도의원 1명
  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관·사회·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0. 20. 권재경 의원 외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재경 의원]

### 가.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거창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함

### 나. 주요내용

- 1)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2)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3)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4)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 나. 군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거창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거창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곽승욱]

### 가. 제안이유

-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공적심사위원회 신설함

가)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 (변경)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나)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구성

- 위원장 부군수,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
-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다)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긴급한 경우 등 서면심의 가능

2) 용어 순화함(안 제1조·제5조·제6조·제9조·제12조)

가) 행하는 → 하는, 현저한 → 뚜렷한, 요하는 → 필요한,  
상신 → 제출, 등재 → 기록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뚜렷한 군민이나 외국인, 단체에 훈공에 따라 훈장을 내려주는 것으로

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위원회를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상훈법령에 맞춰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공정한 공적심사를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에서 행하는”을 “거창군에서 하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6조 중 “높이 선양시킨”을 “드높인”으로 “단체”를 “단체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전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조 제목 “(포상대장의 등재)”를 “(포상대장의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호 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등재 하여야한다.”를 “기록·관리하여야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거창군에서 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포상대상)</b>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u>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u></p>	<p><b>제2조(적용범위)</b>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u></p>
<p><b>제3조(포상권자)</b> 포상은 <u>군수가 한다.</u></p>	<p><b>제3조(포상권자)</b> 포상은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u></p>
<p><b>제5조(표창장)</b>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u>현저한</u> 경우</li> <li>2.~3. (생략)</li> </ol>	<p><b>제5조(표창장)</b>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u>뚜렷한</u> 경우</li> <li>2.~3. (현행과 같음)</li> </ol>
<p><b>제6조(감사장)</b>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u>높이 선양시킨</u> 개인이나 <u>단체</u>에 수여한다.</p>	<p><b>제6조(감사장)</b>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u>드높인</u> 개인이나 <u>단체</u> 등에 수여한다.</p>
<p><b>제9조(포상절차)</b>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u>군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u></p> <p>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u></p>	<p><b>제9조(추천 절차)</b>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u>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lt;신 설&gt;</p>	<p><b>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b>  <u>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u>  <u>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b>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b>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lt;신 설&gt;</p>	<p><b>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b>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 하여야한다.</p> <p>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p> <p>&lt;삭 제&gt;</p>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곽승욱]

###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연가 보상비 지급 근거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구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 나. 주요내용

-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13조)
  - 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 심사
  - 나) 중앙행정기관에서 계획한 공무국외 출장은 제외

2) 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안 제14조)

- 가)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으로 구성
- 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경비 부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위촉위원 1명 이상 포함 ⇒ 외부위원 신설로 현행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그 근거 규정을 변경함

3) 조례로 위임된 연가보상비 지급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항)

- 가)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 나) 내용 : 사용하지 않은 연가(20일 초과하지 않은 범위)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으로 법령적합성을 마련하고
-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규칙」 형식의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심사근거와 심사위원의 외부위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연간운영계획
5.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대상 공무국외출장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조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복무선서)</u>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u>제2조(복무선서)</u>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u>제13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u>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li> <li>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li> <li>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li> <li>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연간운영계획</li> <li>5.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대상 공무국외출장</li> </ol>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③ (생략)

<신 설>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국외출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나. 관련 조문 : 제19조의4(연가계획 및 허가)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1,059	1,060	1,060	1,060	1,060	5,299

### 3. 관련 의견

연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1. 호봉제 : 본봉 29,447,054천원/12월×86%×1/30×15일=1,055,187천원

2. 일반임기제 : 월액 1,870천원×84%×86%×1/30×1/7×70시간×10명=4,503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곽승욱]

### 가. 제안이유

- 거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2)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가) 적용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 나) 적용 배제·제한 : 휴직·과건·교육훈련·정직·직위해제 중인 소속공무원
- 다)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 군의원·청원경찰·공무직근로자·공중보건 의사·공중방역수의사
-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정함(안 제5조)
  - 가) 구성 : 기본항목, 자율항목
  - 나) 복지점수 부여 :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 여부 등 고려 점수화
-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정함(안 제6조)
  - 가) 편의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 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의 이용권 확보
- 5) 후생복지사업을 정함(안 제7조)
  - 가) 장기근속 시 국외시찰, 직장 동호회, 장제용품,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등 지원
- 6)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8조~제10조)
  - 가) 기능 :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심의
  - 나) 구성 : 9명 이내, 직급별 대표, 노조 추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구성. 필요시 민간전문가 위촉 가능
- 7)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직사회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으로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토록 하는 등 법령의 범위내  
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비용추계서**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 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
5.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6. 구내식당 운영 지원
7.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8.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 시설 및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제5조·제7조

나. 비용발생 요인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후생복지사업 지원대상 인원 1,000명 정도 예상
- 2) 공무원 수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합 계	1,215,610	1,556,000	1,604,055	1,653,251	1,693,624	7,722,540	
군비	복지포인트	878,110	1,072,500	1,104,675	1,137,815	1,171,950	5,365,050
	단체보험	240,000	280,000	290,000	300,000	300,000	1,410,000
	출산축하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건강검진	90,000	90,000	92,700	95,481	98,345	466,526
	구내식당	0	6,000	6,180	6,365	6,556	25,101
	그밖의사업 (장제용품 등)	0	100,000	103,000	106,090	109,273	418,363

## 3. 관련 의견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

##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 가. 맞춤형 복지제도

- 1) 복지점수, 단체보험, 건강검진, 출산축하
- 2) 1,330천원×914명=1,215,61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0.20. 최정환 의원 외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 10.2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환 의원]

### 가. 제안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2) 지원 여성기업 용어 정의 및 지원 대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제3조)
- 3)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4)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여성기업인 차별개선방안으로 여성기업 차별 금지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등 경제영역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에 따른 우대 또는 지원 대상인 여성기업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사업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

**제4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가.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 될 경우 청소년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시설 사용료·감면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용신청 중복 시 청소년·청소년동호인에 우선권 부여 신설함  
(안 제9조제2항)
- 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법령불부합 소지규정 삭제  
(안 제10조제1항)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제2항
  - 내용 :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 국민들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범위를 명시
- 3)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사용료 추가부담 등을 정함(안 별표 2)
- 청소년수련관 : 명칭 변경
  -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 수련활동지도로 삭제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사용료 추가부담 신설
- 4)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3)
-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명시함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본래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유휴시간에는 일반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으로 이용범위를 명확화하고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의 추가부담 규정을 신설·세분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사용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의거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를 “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사용 및 사용제한)”을 “(사용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9조(사용허가)</b>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u>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u></p>	<p><b>제9조(사용허가)</b>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u>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u></p>
<p><b>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b></p> <p>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u></p> <p><u>1. 청소년 및 일반인</u>  <u>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u>  <u>3.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u></p> <p>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p> <p>③ <u>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u></p>	<p><b>제10조(사용제한 등)</b></p> <p><u>&lt;삭 제&gt;</u></p> <p>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p> <p>② <u>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u></p>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	추가부담
가. 대강당 (한마당터)	1회 3시간	50,000원	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3)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요금의 30퍼센트
나. 소강당 (참배움터)	1회 2시간	20,000원	
다. 강의실 (한배움터1, 2)	1회 2시간	10,000원	
라. 야외공연장	1회 2시간	20,000원	

2.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	추가부담
다목적홀	1회 2시간	20,000원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5,000원

### 3.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 가.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기준		사용료	
1) 숙박비 (1인1일)	청소년		6,000원	
	일반		9,000원	
2) 강당	공연 행사	오전	70,000원	
		오후	100,000원	
		야간	100,000원	
3) 세미나실	행사 교육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50,000원	
4) 운동장	1일	경기	1회	50,000원
		경기외		100,000원
수련활동지도료		1회 1인 기준	4,000원	

#### 비고

##### 가) 부가세는 별도임

##### 나) 1박 기준

- (1) 그날 18:00 ~ 다음날 09:00
- (2) 식비,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비는 별도계산

##### 다) 이용시간 구분

- (1) 오전: 09:00 ~ 12:00
- (2) 오후: 13:00 ~ 17:00
- (3) 야간: 18:00 ~ 22:00

##### 라)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 (1) 30분 미만: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추가 부담
- (2) 30분 이상~1시간 이내: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 (3)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 마) 강당 냉난방시설: 1시간 초과 사용 시 10,000원씩 추가 부담

##### 바)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행사기기 등의 사용료는 수련원의 내부규정에 따름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구	분	사용료		비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1) 입장료	어른	3,000원	2,500원	20세~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2,000원	1,500원	7세~19세
2) 체험료	체험기구 당	2,000원	2,000원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구분	규 격	사용료			
		주중	주말	성수기	추가부담
캐빈하우스 (4동)	<u>복층, 기준인원 5명, 최대인원 6명</u>	80,000원	100,000원	14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방갈로 (3동)	<u>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u>	60,000원	80,000원	12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전기데크 (9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25,000원	30,000원	3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일반데크 (5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15,000원	20,000원	2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비고

가) 장비(텐트, 코펠 등)임대는 별도 계산

나) 부가세는 별도임

다) 아동의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인 요금 부과

라) 성수기: 7. 20.~8. 20.

마) 주말: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요일·토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바) 주중: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날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제11조제1항 관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일성우주창의과학관에 한정)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성별영향평가 반영
6.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del>「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del>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행안부/국가보훈처)에 따라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 열거 권고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인의 경우 현장에서 증명서류 직접확인, 국가·군·단체의 경우는 감면신청서 첨부로 감면

[별표 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전액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70퍼센트
5. 사용자가 사용일 <u>전날</u> 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80퍼센트	50퍼센트
6. 사용일 <u>그날</u>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하지 않음

카.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반환기준은 수련시설과 같이 예약시에 한함~~

가. 반환시점은 18시영시로 한다.

나.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 가. 제안이유

- 법률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등을 삭제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이 법령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2) 법률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삭제(현행 제6조~제14조)
  - 가) 작은도서관 공간과 위치,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시간, 휴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 나)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과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 3)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가) 지원계획 : 매년 수립, 지원 대상·내용·규모 등이 포함
  - 나) 지원기준 :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작은도서관
- 4)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가) 자료 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 나) 매년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
- 5) 행정 지원을 신설(안 제5조)
  - 가) 자원봉사자, 순회 사서 등 지원
  - 나)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 6) 환수 신설(안 제6조)
  - 가) 지원받은 작은도서관이 6개월 내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환수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인 위임없는 운영기준은 삭제하고
- 나. 작은도서관의 연간 지원 계획의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토대로 군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내용 및 그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매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작은도서관
2.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순회사서 등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이 지원 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나. 관련조문 :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50	60	60	60	60	290

나. 비용추계 상세내역(2020년 기준 = 50백만원)

- 1) 순회사서 인건비 : 18백만원
- 2)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12백만원
- 3) 공립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 : 18백만원
- 4) 작은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 : 2백만원

## 3. 관련 의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정 세 환

#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 가. 제안이유

- 독서의 달 행사 참가자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거창군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함

###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 시행을 위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2)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정함(안 제3조)
- 3)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정함(안 제4조)
- 4)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5조)

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

- 나)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도서, 도서 상품권 지원
- 다) 독서관련 행사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 5)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5,000천원 확보 예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등 다양한 시책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의 독서문화를 조성·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주민에게 지식정보 능력의 향상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활성화 과제 및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등 독서문화 시설의 개선 및 독서자료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독서문화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독서활동 권장·보호·독서문화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독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홍보 추진
3. 독서 동아리·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등 독서문화 행사의 개최 및 독서운동 관련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연계된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도로 도서 또는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2.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3.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독서 관련 행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가. 제5조 독서문화 활동 지원

나.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게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1) 2021년 예산 5,000천원 확보 예정

2) 독서의 달 등 행사 참가자에게 도서·도서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원, 독서실적 우수자 포상 등

## 4. 작 성 자

인구교육과장 정 세 환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0. 20. 권재경 의원 외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재경 의원]

###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나. 주요내용

- 1)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2) 수리비 지원범위 구체화함(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장애인보장구는 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교육, 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잠재된 기능성을 발굴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타인과 보다 의미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 나.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의 필수품인 보장구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수혜를 받고, 수리비 지원범위를 보장구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이내로”를“에서”로 “내구연한 경과자”를“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리의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u>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u>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u>이내</u>로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u>내구연한 경과자</u>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p>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u>「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u>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u>에서</u>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u>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u>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p>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p> <p>④ <u>수리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u></p>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관련조문

제6조(지원대상)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지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 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군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소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 3. 관련의견 :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황

(2019년 기준, 단위:명)

구분	배터리 교체	타이어 교체	합계
계	40	25	65
기초 및 차상위장애인	7	3	10
일반 장애인	33	22	55

※ 관내 의료기 상사(동양의료기, 이원의료기)를 통한 이용 자료 조사

### 2. 비용추계 : 65명 × 300천원 = 1,950천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10명 × 300천원 = 3,000천원

- 일반장애인 : 55명 × 300천원 = 16,500천원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 가. 제안이유

-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가입)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명칭(안 제1조)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 2) 기능(안 제4조)
  - 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나)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라)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 마)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 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 사)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구성(안 제5조) :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4) 회의 및 의결(안 제9조)
- 가) 정기회의 : 연 1회
  - 나)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 5) 사무국(안 제13조)
- 가)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 나)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함
- 6) 재원(안 제16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 가) 연 회비
-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본 운영규약은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제 해결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본 규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2차 개정 : 2020년 1월 31일  
3차 개정 : 2020년 3월 25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0. 3. 25.>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시행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6.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신설 2020. 3. 25.>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1. 31.>

②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로 하고, 선거 또는 업무대행 등으로 그 지위가 승계될 경우 승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5조의1(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은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회원가입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5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의 탈퇴는 “별지2” 서식에 의하여,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0. 1. 31.>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에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5조의1제1항에 의한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 31.>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나 업무담당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합의 선출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 31.>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를 지명한다.
2. 회장은 회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0. 1. 31.>
- ⑤ 감사는 협의회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개정 2020. 1. 31.>
-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을 관장한다. <개정 2020. 1. 31.>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 ② 삭제 <2019. 1. 19.>
  - ③ 임원의 임기는 단체장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0. 1. 31.>
  - ④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임기는 지명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신설 2020. 1. 31.>

## 제 4 장 회 의

-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 1. 31.>
-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31.>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의1(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9.]

## 제 6 장 자 문

**제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 구성은 10명 내외로 한다. <신설 2020. 1. 31.>

2.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특별회원)** ① 본 협의회 취지에 찬동하는 유관기관은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금액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신설 2020. 3. 25.>

## 제 7 장 재 정

**제16조(재원)** ①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가.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2. 특별회비 <개정 2019. 1. 19.>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제17조(관리)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회계연도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 장 보 칙

제18조(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은 다음연도 첫 번째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한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 가. 제안이유

-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665,000천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1년	665,000	665,000	665,000			665,000	

- 4)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재) 거창군장학회는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 나. 2021년 장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거창의 대표 이미지 ‘교육도시’ 확고히 하며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규섭]

### 가. 제안이유

-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함.

### 나. 주요내용

- 1)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2)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 3) 사 업 비 : 3,486천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1년	4,038	3,486	3,486			3,486	

4) 산출기초 : '19년 결산 보통세 26,822,217천원  $\times$  1.3/10,000 = 3,486천원

5) 사업내용

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나)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가.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출연하도록 법적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

나.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그 역할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근거법령 :

- 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 나)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2) 대 상 :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3) 사 업 비 : 843,000천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타
2021년	691,000	843,000	843,000	-	-	843,000	

4) 사업내용

가)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4명, 기간제 4명) 지원

나)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가. 거창문화재단은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나.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문화예술분야는 공연 취소 등 공연생태계의 변화하도록 바뀌고 이에 무관중 온라인 공연, 언택트 스트리밍 공연 등 변화된 공연환경에서 생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다. 2021년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되도록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가. 찬성(권순모) :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안 원안 제안

나. 반대(김향란) :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안 부결안 제안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석위원 : 5명

○ 표결 :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수 없음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 가. 제안이유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에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나. 주요내용

- 1)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 2) 위탁 참여인원 : 9명(예정)
- 3) 위탁사무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불법주차 계도 업무 수행
  - 나)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관리 등 업무수행
  - 다)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 4)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5) 수탁자격 : 장애인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 민간 기관(장애인 단체 등)
- 6)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7) 향후계획
  - 가) 군의회 동의안 제출 : 2020. 10월
  - 나)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11월
    - ※ 공고기간 : 2020. 11. 9. ~ 11. 23.
  - 다) 선정심의회 개최 : 2020. 12월 중
  - 라) 위·수탁 협약체결 : 12월중
- 8) 소요예산 : 54,750천원(도비 12,096, 군비 42,654)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수입을 통해 통합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비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임
-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공간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매칭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기관으로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 모집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령 및 기타 제반사항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2020. 11. 9.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 가.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시설현황

- 가) 시 설 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다) 시설개요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1,500.44㎡		지상2층 / 774.38㎡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4동 282.74㎡
근무인원	9명		4명		1명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4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3층	지도자숙소(5실)	옥상	천체관측관	

### 2) 현 위탁비 지원 현황

시 설 명	내 역
월성청소년수련원	배치지도사 1명 인건비 22,968천원 지원 (국비 10,938, 군비 12,030)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비 230,000천원 지원(군비)
거창국민여가캠핑장	대부료 8,980천원 징수

### 3)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현황

시설명	위탁 현황		기간	비고
월성청소년 수련원	최초위탁	2000. 12. 28. ~ 2003. 12. 27.	3년	
	1차 계약갱신	2003. 12. 28. ~ 2006. 12. 31.	3년 4일	
	2차 계약갱신	2007. 1. 1. ~ 2009. 12. 31.	3년	
	3차 계약갱신	2009. 1. 1. ~ 2012. 12. 31.	3년	
	4차 계약갱신	2013. 1. 1. ~ 2015. 12. 31.	3년	
	5차 계약갱신	2016. 1. 1. ~ 2019. 12. 31.	4년	
	6차 계약갱신	2020. 1. 1. ~ 2020. 12. 31.	1년	

시설명	위탁 현황		기간	비고
월성우주 창의과학관	최초위탁	2014. 3. 3. ~ 2016. 12. 31.	2년 9개월	
	1차 계약갱신	2017. 1. 1. ~ 2020. 12. 31.	4년	
거창국민 여가캠핑장	최초위탁	2014. 6. 12. ~ 2016. 12. 31.	2년 6개월	
	1차 계약갱신	2017. 1. 1. ~ 2020. 12. 31.	4년	

#### 4) 위탁사무 및 조건

##### 가)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연 2회(연11,000천원) 거창군에 납부
- ※ 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일까지(5년간)

-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6)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 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7)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공개모집 시 지원단체 없으면 위원회 심의 후 현 수탁기관 재연장

#### 8) 향후계획

##### 가) 공개모집의 경우

- 2020. 11월 : 군의회 동의
- 2020. 11월 : 공개모집 공고
- 2020. 11월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학식과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20. 12월 : 수탁자 선정 발표
- 2020.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나) 계약갱신의 경우(공개모집 후 지원단체 없을 시)

- 2020. 11월 : 군의회 동의
- 2020. 11월중 : 재위탁 신청서 접수  
(신청서, 청소년단체신고필증,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종사자배치계획, 장비보유현황 등)
- 2020. 11월 :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 2020.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해용]**

- 가. 청소년활동시설(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 캠핑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임.
- 나. 청소년활동시설은 초·중·고 학교와 안전한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으로 이용인원의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 지속적 성과를 거양해 오고 있음
- 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 학교의 등교중단 및 단체활동 자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소년활동 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시설활용을 위해 위탁운영이 타당함
- 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위탁기관 모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부결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가. 찬성(김향란) :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제안

나. 반대(권순모, 박수자, 권재경) : 민간위탁 기간 조정 필요 등 부결안 제안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재석위원 : 5명

○ 표결 :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수 없음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